

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東基 永登浦區議會決算檢查委員
選任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 이
의 없으십니까?

(「이의 없습니다。」하는 이 많음)

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2.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議會事務局設
置條例中改正條例案(職類調整)

(永登浦區廳長提出)

(17시14분)

○委員長 金東基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
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을 上程합니다.

總務局長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.

○總務局長 金榮俊 總務局長입니다.

평소 존경하는 金東基 위원장님 그리고 行
政財務委員 여러분!

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
條例改正에 參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
감사를 드립니다.

먼저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
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

본 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한
관련조례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치구
의회 사무국설치 조례상 기능직 지방공무원의
일부 職列・職類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
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
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 事務局設置條例 第
4條 별표 내용상에 기능직중 정원중 8등급
사무보조원(조무) 2명, 9등급 사무보조원(조
무) 1명, 10등급 사무보조원(조무) 2명을 정
원의 증감없이 각각 사무보조원 필기직류 개

정정비를 해서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원활을
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.

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
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. 이상으로
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東基 수고 하셨습니다.

다음은 金熙中 專門委員으로부터 이 건에
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.

專門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金熙中 專門委員 金熙中입니다.

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의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.....

(參 照)

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('91. 12. 31 대통
령령제 13532호)으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
직렬 및 직류가 조정되었는데 이를 보면,
“사무보조직렬중조무 및 필기직류”가 “사무
보조직렬에 필기직류, 조무직렬에 조무직류”로
조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
례(안)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바 우리구 의
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중 “8등급지방사무보조
원(조무)”가 “8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”로
“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”가 “10등급지방
사무보조원(필기)”로, “9등급지방사무보조원
(조무)”가 “9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”로 조
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이를 타당하다고 보며
이에 따른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.

직급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.

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

현				개				정(안)	
직군	직렬	직류	정년	직군	직렬	직류	정년		
사무보조	사무보조	조무	58	사무보조	사무보조 필기		58		
		필기			조무	조무			

.....